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320호

나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다. 제안일자 : 2022년 10월 17일

라. 회부일자 : 2022년 10월 21일

2. 제안이유

○ 「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」 개정(2022.4.시행)에 따라 ‘서울특별시 소방체험관’을 직속기관으로 편제·신설,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명칭·주소 반영과 소방서의 도로명 주소를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대통령실 이전으로 ‘청와대소방대’ 명칭을 ‘대통령경호처 소방대’로 변경 및 소방활동 범위를 구조·구급 분야까지 확대하여 사무범위·내용 명확화(안 제44조, 제46조)

○ ‘서울특별시 소방체험관’을 직속기관으로 편제·신설(안 제50조, 제51조, 제52조)

○ 종로소방서 및 금천소방서의 도로명 주소 정비(안 별표1)

4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가. 개정안의 개요

○ 개정안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청와대소방대의 명칭을 변경하고 소방활동 범위를 구조·구급까지 확대하며, 「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」 개정('22.4.15.시행)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방체험관을 직속기관으로 편제·신설하고자 제출됨.

나. 소방분야 직속기관 개편

○ 현행 '청와대소방대'를 '대통령경호처소방대'로 명칭을 변경하고, '시민안전체험관'을 신설해 소방분야의 직속기관은 29개에서 30개로 개편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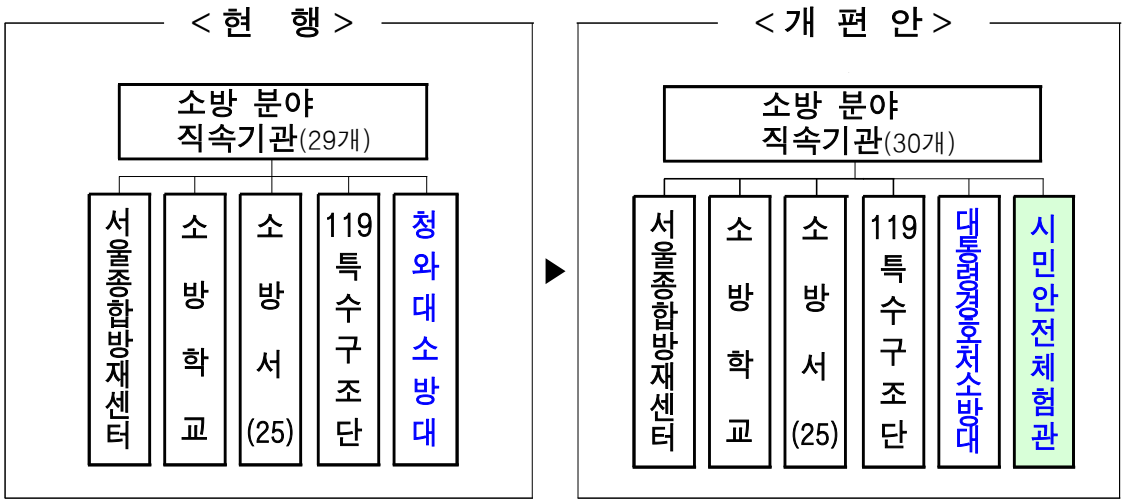

(1) 청와대소방대 명칭 변경 및 소방활동 범위 확대(안 제44조, 제46조)

○ 청와대소방대는 2003년부터 서울시 직속기관으로 편제・운영되었으며, 화재・구조・구급・외부행사 안전점검 등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및 주변지역 소방활동 전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해 옴.

○ 그러나 대통령집무실의 용산 이전(2022.5)에 따라 개정안은 '청와대소방대'의 명칭을 '대통령경호처소방대'로 변경하고 사무범위를 대통령 집무실(국방부), 관저(한남동) 및 주변 지역으로 확대・변경함.

- 근무 인원은 기존 30명에서 소방분야 정원 내 인력 재배치를 통해 45명으로 늘어남.

○ 또한 소방활동 범위를 화재의 예방・경계・진압에서 구조・구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사무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함.

< 청와대소방대 개정사항 >

구 분	당 초	개 정
기구명칭	청와대소방대	대통령경호처소방대
주 소	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(세종로)	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(용산동3가)
사무범위	청와대 안 화재의 예방・경계・진압	대통령집무실, 관저 및 주변지역에서 화재의 예방・경계・진압 및 구조・구급

○ 관할구역이 단일 구역으로 집적되어 있던 청와대(25만㎡)와 달리 용산 대통령실은 대통령 집무실(37만㎡)과 한남동 관저(15만㎡)로 분리・확대된 만큼, 집중적인 소방활동과 차질 없는 소방 대응을 위해서는 신속한 조례 현행화가 필요함.

(2) 시민안전체험관 직속기관 신설(안 제50조, 제51조, 제52조)

○ 「소방기본법」 제5조[1]와 「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」 시행령 제9조[2]는 시・도지사가 소방체험관 운영과 체험형 안전교육 실시를 위한 안전체험관을 설립・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○ 최근 「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」[3]의 개정('22.4.15.시행)으로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위기대처 능력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조례로 직속기관인 소방체험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됨.

○ 서울시는 현재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내 하부조직으로 보라매・광나루 안전체험센터를 각각 운영 중이며, 소방안전 및 선박・풍수해・지진 등의 상황에 대비한 다양한 체험시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.

- 또한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권역별 안전체험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, 청년혁신파크(동북권), 문화비축기지(서북권) 내 안전체험관 조성을 계획하고 있음.

---

1) 「소방기본법」 제5조(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) ①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장은 소방박물관을, 시・도지사는 소방체험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2) 「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」 제9조(안전체험관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안전체험관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.

3) 「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」 제5장(소방체험관) 제14조(설치 등) ① 시・도는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주민의 위기 대처능력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시・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체험관을 설치할 수 있다.

< 서울시 안전체험센터 운영현황 >

구 분	광나루안전체험센터	보라매안전체험센터
위 치	광진구 능동로 238	동작구 여의대방로 20나길 16
개 관 일	2003. 3. 6.	2010. 5. 25.
규 모	3/1층 연면적 5,444㎡(대지 5,041㎡)	3/1층 연면적 8,020㎡(대지 4,753㎡)
사 업 비	20,549백만원	41,452백만원
주요시설	선박, 풍수해, 화재 등 20종	지진, 지하철, 전문 응급처치 등 20종
운영실적	총 3,125,852명 방문(2022.7.기준) *일일 평균 565명, 월 평균 13,798명	총 1,635,295명 방문(2022.7.기준) *일일 평균 476명, 월 평균 11,557명

○ 법령과 조례를 통해 시민안전체험관이 직속기관으로 상향 규정되는 만큼 소방안전교육에 대한 책임성 강화와 함께 화재·구조·구급 등 재난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의식과 위기대처 능력 제고 등의 입법효과가 기대됨.

다. 종로소방서·금천소방서 도로명 주소 정비(안 별표1)

○ 종로소방서는 청사의 노후화를 해소하기 위한 재건축을 위해 임시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주소를 변경하고, 금천소방서는 기존의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정비함.

< [별표1] 종로소방서·금천소방서 주소 정비 >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	내 용
종로소방서	종로구 종로1길 28(수송동)	종로구 율곡로 78(운니동)	임시청사 이전
금천소방서	금천구 독산동 1054-8번지	금천구 시흥대로 342(독산동)	지번주소 정비

- 기존 종로소방서 청사는 소방합동청사 건립(2025.10. 준공예정)으로 소방재난본부, 종합방재센터와 함께 배치될 예정임.

○ 개정안은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소방서 위치에 대한 시민의 혼선을 방지하고 도로명 주소로 통일하여 정비하는 타당한 입법 조치임.

담당 조사관	연락처
노혜미	02-2180-8057